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과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과 2025년 9월 30일로 각각 연장하고, 해양수산분야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본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과 소금품질관리를 위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게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본부 정원 1명(7급),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1명(7급)과 어업관리단 정원 2명(7급 2명)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7급)은 존속기한 만료(2023년 9월 30일)로 해소하고, 본부 증원 인력 중 존속기한이 2024년 1월 31일까지인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본부에 존속기한이 2023년 9월 30일까지인 7급 1명과 존속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1명(7급)과 지방해양수산청에 4명(7급)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본부 5급 7명은 6급으로 국립해양조사원 6급 1명과 해양안전심판원 6급 1명은 각각 7급으로 지방해양수산청 5급 5명과 6급 1명은 8급 6명으로 원상복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5급 정원 10명을 6급에서 직급상향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급 정원 1명을 7급에서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하위 직급(6급 1명, 8급 1명)에서 각각 직급상향하며, 어업관리단의 정원 14명(5급 3명, 7급 11명)을 하위 직급(6급 3명,

8급 3명, 9급 8명)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의 18명(5급 6명, 6급 1명, 7급 11명)을 하위 직급(8급 9명, 9급 9명)에서 각각 직급상향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해양정책과·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토”를 “해양정책과·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기후환경국제전략팀·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한다”를 “보하고,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을 제17항부터 제 1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영·관리
3.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5.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생산·개선 및 국제지침 대응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부문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부문 배출권거래제 제도 운영에 관한
8. 해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과 및 수산방역과”를 “운영지원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과·수산방역과 및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해양수산사무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6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금의 품질검사 운영
2.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제도의 운영·관리
3. 우수천일염의 인증 및 관리
4. 이력추적관리 천일염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제1항 단서 중 “6명”을 “7명”으로,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

표1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2명(7급 2명)”을 “1명(7급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2명(7급 2명)”을 “4명(7급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4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월 31일”을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2024년 1월 31일”을 “2024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5”를 “6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1”을 “602”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7”을 “210”으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3”을 “20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18 중 “(제42조제1항 관련)”을 “(제42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8의2를 신설한다.

별표 20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256”을 각각 “255”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19”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81”을 “79”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7”을 “78”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30”을 “29”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91”을 각각 “89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2”를 “45”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70”을 “167”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7”을 “247”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22”를 “319”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8”을 “100”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9”를 각각 “1,271”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8”을 “10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1”을 “364”로 하고,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5”를 “212”로 하며,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8”을 “109”로 한다.

별표 26 중 “(제42조제8항 본문 관련)”을 “(제42조제8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6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분장하고,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7급 2명 중 1명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나머지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별표 21의2의 7급 1명과 별표 25의 7급 4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0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명으로 본다.

② 별표 18의2의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정원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2의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③ 별표 20의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과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0의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과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21의2의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

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명,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명과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명으로 본다.

⑤ 별표 25의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9명과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04
일반직 계	30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3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8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7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4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2
사무운영서기보	3

현행	개정안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⑤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정책실에 <u>해양정책과·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토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⑥ ----- <u>해양정책과·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기후환경국제전략팀·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토-----</u> ----- ----- ----- ----- <u>보하고,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12. 기후변화협약 관련 해양 분야 대응 총괄</u>	<u><삭제></u>

<17> (생략)

<18> (현행 제17항과 같음)

<신 설>

⑧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용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⑥ 삭 제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u>2명(7급 2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 ----- ---. ----- ----- ----- ----- ----- ----- ----- ----- ----- 4명(7급 4명)----- ---.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6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의2와 같다.	⑧ ----- ----- ---. <단서 삭제>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해양수산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u>별표 26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의 정원 중 1명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명으로 본다.</u>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삭 제>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5년 9월 30일</u> ----- --.
②·제3조 (생 략)	②·제3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 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3조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② ----- ----- ----- 2024년 9 월 30일-----. ③·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265호 해양수 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 항(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 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 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 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 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정원 6명(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 명 및 행정주사·시설주사·공 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 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3 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 3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 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5의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 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 호서기 6명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 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해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삭 제>

양수산부령 제45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 및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 별표 2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명) 및 별표 25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각각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26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17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u>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u>)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7명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2024년 9월 30일 ----- -----.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4
	년 7월 31일-----.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05</u>	<u>606</u>	+1
·	·	·	
·	·	·	
일반직 계	<u>601</u>	<u>602</u>	+1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u>207</u>	<u>210</u>	+3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 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 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203</u>	<u>200</u>	-3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32</u>	<u>33</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제42조제 1항 관련)	(제42조 제1항 본 문 관련)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56</u>	<u>255</u>	-1
일반직 계	<u>256</u>	<u>255</u>	-1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8</u>	<u>19</u>	+1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 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81</u>	<u>79</u>	-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 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 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7</u>	<u>78</u>	+1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 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 ·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u>30</u>	<u>29</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91</u>	<u>890</u>	-1
일반직 계	<u>891</u>	<u>890</u>	-1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u>42</u>	<u>45</u>	+3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u>170</u>	<u>167</u>	-3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 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 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u>237</u>	<u>247</u>	+10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 ·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322</u>	<u>319</u>	-3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 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 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 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08</u>	<u>100</u>	-8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69</u>	<u>1,271</u>	+2
일반직 계	<u>1,269</u>	<u>1,271</u>	+2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08</u>	<u>109</u>	+1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 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51</u>	<u>364</u>	+13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물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215</u>	<u>212</u>	-3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물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18</u>	<u>109</u>	-9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6]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	(제42조제8항 본문 관련)	(제42조제8항 관련)	
·	·	·	
·	·	·	